

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■

2011. 12. 29. 선고 2011헌가20, 2011헌가 24, 2011헌가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사건, 2011헌가28 약사법 제97조제1항 위헌제청 사건, 2011헌가33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 사건, 2011헌가41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사건, 2011헌가3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위헌제청 사건 : 각 위헌결정

김영수 변호사

1. 위 사건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입니다.
2. 다운로드 : [2011헌가2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](#)
[2011헌가24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](#)
[2011헌가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](#)
[2011헌가28 약사법 제97조제1항 위헌제청](#)
[2011헌가33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](#)
[2011헌가41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](#)
[2011헌가3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위헌제청](#)